



발간호 제 21 호 2010 년 5 월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 COVER STORY: AEO 팀장과의 一問一答(일문일답) ..... 1

▶ FTA News: 실무로 본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 2

▶ VOICES FROM THE FIELDS: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의 이중적 외교 ..... 3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4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① ..... 5

▶ WHERE IS GRACE CHANG? ..... 7

▶ ABOUT WRITERS ..... 7

지난 5 월 11 일에 개최된 관세청의 AEO 공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신한관세법인은 관세법인 최초로 AEO 공인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는 AEO TF 팀장과의 interview 를 통해 인증준비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여보고자 한다.

## AEO TF 팀장과의 一問一答



**Q. AEO 인증준비를 하게 된 계기는?**

A. 다수의 다국적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신한관세법인은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AEO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AEO 제도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AEO 제도가 글로벌 무역환경과 물류공급망에서 '새로운 요구'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임을 인지하였다. 또한 AEO 공인인증요건에 부합하도록 경영, 관리, 업무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고객사의 화물과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최상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 AEO 인증을 준비하게 되었다.

**Q. AEO 인증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A. 2009 년 5 월 AEO 인증준비를 위한 T/F Team 을 꾸려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준비를 시작하였고 11 월 6 일에 서류제출 후 2010 년 2 월 3 일에 서류심사가 완료되었다. 현장심사는 2010 년 2 월 9 일에 종료되어 총 준비에 소요된 기간은 약 6 개월 정도이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는 약 3 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Q. AEO 인증준비에 투입된 인원은?**

A. 초기에는 관세사 3 명이 AEO 인증준비를 시작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업무의 범위와 업무량이 3 명으로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어 2 명을 충원하였고 총 5 인의 관세사로 T/F

Team 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각 기준을 충족하도록 절차서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이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거의 모든 직원이 전사적으로 투입되어 준비 했다고 볼 수 있다.

**Q. AEO 인증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A.

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신한관세법인은 지난 45 년 동안 회칙, 사규, 상조회칙과 업무절차도 등을 제외하고는 문서화된 절차서가 없었기에 AEO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문서화된 절차서를 구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업무 절차를 문서화로 한다는 것이 생소하고 난해한 일이었지만, T/F Team 에서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반영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담당자의 검토, 부서장의 검토는 물론 대표이사님의 확인까지 받아 정식 절차서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 차례의 수정 및 보완절차를 거쳐서 신한관세법인의 21 가지 절차서가 완성되었다.

② "공감대의 형성과 실행의 어려움"

새롭게 구축된 절차가 실행이 되도록 하는 작업은 절차서를 만드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AEO 가 요구하는 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부여된 임무가

자연스럽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 또한 많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육 및 반복적으로 AEO 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절차서의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workshop 을 가지며 여러 차례의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한 결과 직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직원들 스스로 절차서를 실행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실행자료들이 하나 둘씩 쌓여 관세청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Q. AEO 공인인증 기준 중 가장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준은?**

AEO 공인인증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Risk Management" 부분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웠다. 관세법인의 경우는 수출입 신고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법규준수사항이므로 수출입 오류점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위험관리절차의 작성을 시작하였다. Risk Management 는 위험요소(관세법 등 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를 사전에 식별하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요소의 식별 ⇒ 위험요소의 평가 ⇒ 관리대책 수립 ⇒ 관리대책 실행 ⇒ 실행결과 평가"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구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

**Q. AEO 인증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A. 앞서 설명했다시피, 관세사 5 명이 T/F Team 을

만들어 준비를 했지만, 전사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AEO 인증을 결코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AEO 인증준비에 있어 전사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및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이념이나 목표가 뚜렷하게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AEO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수출업체 또는 물류업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미국의 물류보안제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고 AEO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관세당국에서는 AEO 업체와 非 AEO 업체에 대한 구별을 보다 분명하게 하여 확실하게 차등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EO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장래에 거래환경이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특히, 물류공급망에 속해 있는 Logistics Service Provider 의 경우에는 AEO 인증의 획득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EO 인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선점자들의 조언을 듣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AEO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인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부터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이며,

AEO 인증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돌발상황을 사전에 예견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FTA News**

**실무로 본**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협정별, 품목별, 모델·규격별로 각각 인증을 부여하던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여 2010 년 4 월 1 일부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확대적용하고 있다.<sup>(1)</sup> 이하에서는 개정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의 실무적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구분 및 혜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는 경우 수출 또는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는 경우 인증 품목(HS CODE 6 단위 기준)에 대해 FTA 협정별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의 실무적 절차**

**1. 인증요건충족 확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다음과 같이 ①원산지증명능력, ②원산지관리능력, ③법규준수 요건이 있으며, 인증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①원산지 증명능력**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CODE 6 단위 기준)을 수출하는 자

**②원산지 관리능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는 자

구분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EFTA	한-EU
일반수출자	선적 분 마다 서류제출			원산지증명 문구기재 서명	6000 유로 이하인 경우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가능
업체별 인증수출자	1 회 인증 후 모든 물품에 대해 확인절차 생략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번호 기재로 서명대체	모든 품목에 대해 자율발급 가능
품목별 인증수출자	1 회 인증 후 모든 물품(HS6 단위) 및 해당 협정에 대해 확인절차 생략			인증품목에 대해 인증번호 기재로 서명대체	인증품목에 대해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구분 및 혜택 >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 포함)를 지정·운영하는 자

**③법규준수**

최근 2 년간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최근 5 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2. 관할세관에 인증신청**

인증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인증신청서를 작성하며, 인증의 각 요건별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산지증명능력 관련**

원산지증명능력은 각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소개자료, 제품생산공정 설명서와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소명서, BOM(자제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HS 6 단위 물품의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모델은 주로 수출금액 또는 수출건수를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3~5 개의 모델이고, 모델·규격별 원산지관리 현황표를 첨부한다.

**② 원산지관리능력 관련**

원산지관리능력 요건확인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대장, 서명카드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관리능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기존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발급·작성대장의 관리내역과 서명권자를 관리하는 서명카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과 원산지증명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업무매뉴얼,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관할세관의 요건구비 심사 및 인증서 교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심사는 관할세관에서 이루어진다.<sup>(2)</sup>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하면 전산상으로 신청의 형식요건이 자동 심사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관할세관에 접수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세관은 서면심사를 통해 인증요건구비에 대해 심사하며, 요건충족이 확인되면 20 일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

중족여부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 할 수 있다.

4. 사후관리

품목별 원산지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은 인증을 받은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 인증유효 기간 만료 30 일전에 연장신청을 하고,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유의사항

품목별 원산지인증은 HS 6 단위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으로서 인증 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모델·규격의 원산지중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체 스스로 모델·규격에 대한 원산지는 별도로 판정해야 하며, 특정 모델·규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체 스스로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하거나 발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준 혁  
(jilee@customsservice.co.kr)

<sup>1)</sup> 기존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이용현황: 59 개 업체에서 78 개 품목 인증. (2010.3 관세청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설명자료 인용)  
<sup>2)</sup> 업체별 원산지인증의 경우 관세청 CAE 센터에서 심사한다.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자주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두려워집니다. 게다가 중국 사람들은 좀처럼 속을 안 열어 보이니 더욱 더 그렇습니다. 곰 같다고나 할까요?  
곰 같은 중국을 필자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외교정책에서 취한 행태를 살펴보면 중국 사람들의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면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래 소개합니다.

중국의 양면성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의 이중적 외교



2009 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국 60 주년, 개혁개방 30 주년, 천안문사태 20 주년을 맞는 중국입니다. 세계의 중심 국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대만조차도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들 중국을 자주 다니고 잘 알아서 그런지 중국에 대해 누구나 한마디씩 합니다. 중국은 이거야, 아니야 중국에서는 이래야 돈번데, 누가 중국의 고위층과 끈을 맺었더니 사업이 술술 풀리고 안 되는 사업 허가까지 받았다는군, 역시 중국은 관시(關係)가 중요해, 사업보다는 사람을 많이 알아야 한다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중국과 관련된 사람은 나름대로 중국 통으로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나 중국 통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너무 넓고 복잡한 구조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자주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두려워집니다. 게다가 중국 사람들은 좀처럼 속을 안 열어 보이니 더욱 더 그렇습니다. 곰 같다고나 할까요? 곰 같은 중국을 필자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외교정책에서 취한 행태를 살펴보면 중국 사람들의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면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래 소개합니다.

첫째, 중국은 모든 것이 이중적이지만 특히, 외교에서 그렇습니다. "화평굴기(和平掘起)"라는 외교원칙이 대표적입니다. "평화적으로 우뚝 선다."는 이 말 자체에 이미 이중성이 담겨 있습니다. 외부에 중국 외교가 공격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면 "평화적" 이라는 앞부분을 강조하고 국내에서 중국외교가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나오면 "우뚝 선다."는 뒷부분을 강조합니다. 이중성의 원조는 도광양희(韜光養晦)입니다. "재능을 감추고 실력을 기른다."는 이 외교원칙은 겉과 속이 다른 "허허실실전법"의 대명사입니다. 탈북자처리도 이중적입니다. 탈북자처리 원칙은 겉으로는 그렇게 명쾌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 한다."는 2 가지 원칙입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원칙을 택하느냐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탈북자 체포가 외부의 주목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조용히 복송 합니다. "반면 이미 공개가 되어 국제이목이 집중되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제 3 국이나 한국으로 보냅니다. 북한 핵문제의 대처방식은 이중성의 극치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원칙은 "한반도 비핵지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입니다. 북한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비핵지"를, 미국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합니다. 꽃놀이패도 이 정도면 압권입니다.

둘째, 중국은 끝까지 실리성을 추구합니다. 2007 년 4 월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간 방일한 중국 지도자에는 덩샤오핑(鄧小平)스타일과 장쩌민(江澤民)스타일이 있었습니다. 30 년 전 방일한 덩은 신칸센을 타고 다니며 일본의 과학기술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덩샤오핑"붐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장쩌민은 육박지르는 설교조로 과거사 문제를 추궁하다 양국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졌습니다. 이번에 원 총리는 "덩샤오핑"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정"을 강조했다며,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로 다가갔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중국지도자가 이 정도로 일본을 평가해준 것은 처음"이라면 흐뭇해했습니다. 대중(對中) 강경론을 펼쳐온 요미우리, 산케이신문도 "앞으로 지켜보겠다."며 토를 달긴 했지만 "자세 변화" 라고 평가했습니다. 야스쿠니 문제 등으로 일본을 거칠게 몰아붙이던 중국이 이처럼 달라진 데는 경제적 실리, 인권문제 등으로 불참 기운이 팽배했던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국익과 실리라는 대전제 앞에 "속마음은 달라도 겉으로 웃는"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1 년 중국의 WTO 가입 시 지적재산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였는데 미국에 대해 수세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순간까지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실리적인 양보를 얻어 내곤 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흑자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여유분으로 대량 구매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나 설비자재와 같은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으로 하여금 중국의 시장성을 의회관계자에게 설득시키는 작업을 병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협상의 최후 마감시간까지 가면서 중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끈기와 실리성을 보였습니다.

힘을 겨루는 상대가 버거우면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를 적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를 하고, 상대가 지칠 즈면 손을 내밀어 어르고 달래는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방식입니다.

**셋째, 중국은 상호견제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미국간에 난관에 봉착되면 중국과 EU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한편 중국과 한국과의 유대강화는 일본견제의 목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로 자본과 기술입니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일본의 경쟁 상대국화 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기술이전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중국은 자주 비판해 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중국과 중국이 경쟁상대국화 되는 것을 꺼려하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상호 작용하는 까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목표는 일본이거나 미국인데도 한국이나 EU 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국가간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미국과 EU, 일본 등의 입장 차이를 적절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즉, 협상에 따라 융통성을 보이면서 이들을 상호견제를 시킴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상 곰 같은 중국 사람들의 특징 중 그 일면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중국 사람들과 협력을 할 때 냉정한 두뇌와 이성적 결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동안 일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안 해도 될 말까지 다해온 고 노무현대통령은 최악의 반일 대통령으로 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도 잃어버린 5 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형무형의 손실을 다 합치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신사참배에 중국이 반발할 때 우리는 박수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중성의 달인인 중국은 늘 국익과 화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본을 대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화를 낼 때 내더라도 항상 분노의 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은 앞으로 어떠한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여신 오카시오는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앞머리가 많은 것은 그를 처음 본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지나쳤을 때 다시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의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은 빨리 지나가기 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기회를 뜻하는 영어 단어 "Occasion"도 여신 오카시오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송승우, 이제는 불로오션이다) 우리는 여신 오카시오를 알아보고 머리카락을 닦아채 큰 나라 사이에 낀 이점을 살릴 것인지,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을지는 우리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한국전자금융주식회사

사장 박상태

(stpark2009@hanmail.net)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장섬유 연신 가공사의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외국환 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 51 조 내지 56 조에 규정되어 있는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음이 판명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탄력관세제도이다.

본 규칙은 2009년 6월 19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 가공사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별표 1의 일부 물품을 제외한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m,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 5402.33.9000 호)는 시행일로부터 최초 수입되는 물품부터 3년간 2.37%~ 8.6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덤핑방지관세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며, 쟁점사항으로 최저수출가격의 적용 기준일을 두고 선적일과 수입신고일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일로 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재정부는 수입신고일로 보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환 거래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범위, 제재 및 검사결과의 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시행세칙이 제정되었으며, 5월 1일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외국환 거래의 검사방법은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로 구분되며, 기존에는 서면검사가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원칙적인 검사방법이 실지검사로 변경됨으로써 검사 방법이 강화되었다.

본 개정에서는 검사대상자 외환거래 자율



점검제도가 도입되어 세관장은 검사 실시 전에 검사대상자에게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제공하고,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검토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자율점검 결과를 성실하게 제출한 검사대상자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자진 신고로 보아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외환거래 자율점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불법행위 적발 및 추징에서 사전정보제공에 따른 자율성 부여로 검사에 대한 접근방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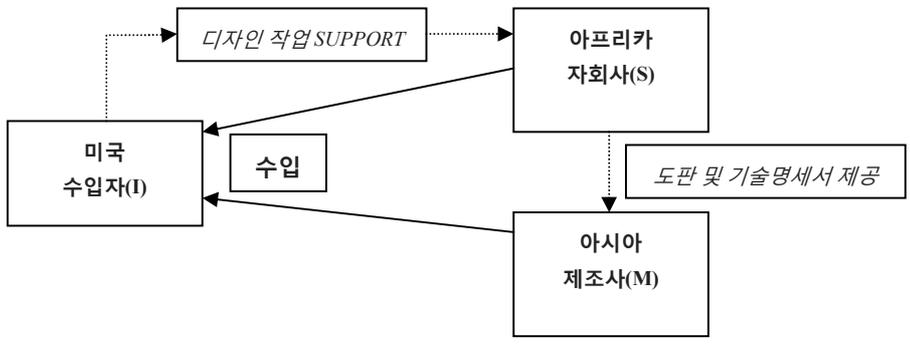
(yjseo@customsservice.co.kr)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 생산지원 : 평가 및 비례배분 (HQ H031244)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래사실 관계도>

### □거래사실

수입자 (I)는 완전소유의 아프리카 자회사 및 아시아 소재의 관계없는 제 3 의 제조자로부터 의류를 구매/수입  
 자회사 (S)는 미국에 거주하는 (I)직원 2 명의 도움을 받아 수입상품을 디자인하며, (I)는 해당 디자인 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  
 (S)는 의류 생산의 여러 공정을 독립된 제조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있으며, (S)가 아프리카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S)가 (I)에게 청구하는 물품가격과 동일함. 이 가격은 (S)가 행하는 디자인 비용 차액을 포함하지 않음.  
 (I)가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의류의 80%는 '아프리카 성장 기회 법'에 따라 면세 처리됨. 아시아에서 제조되는 모든 스타일의 의류는 독립된 제조자들(M)이 제조하며, (S)가 아프리카 에서 조율함.  
 (S)는 무료로 (M)에게 도판 및 기술명세서 세트를 제공하며, 기술명세서 세트는 스타일 넘버 참조; 의류 스케치; 시방서 별 치수 등으로 구성됨. 열거된 모든 아이템들이 매 스타일마다 필요한 건 아님.  
 (S)가 (M)에게 보내는 도판 및 기술명세서 세트는 (S)가 의류 제조 시 사용하는 것과 유사.

(I)에 따르면, (I)의 두 직원은 1 년에 4 번 7 주일간의 아프리카 출장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  
 (I)의 두 직원은 직접 디자인을 행하지 아니며, 아프리카에 있는 디자이너들의 업무를 지시하며 평가함. 실제 디자인보다 판촉에 더 많이 관여하며, 아프리카 출장기간 동안에는 완성품을 조사하고 디자인 작업 검토를 행함.

### □쟁점

1. (I)가 미국에서 행하는 특정 디자인 작업이 생산지원에 해당하는가?
2. (S)가 수행한 특정 디자인 작업이 생산지원에 해당하는가?
3. 해당 작업의 일부가 생산지원에 해당한다면, 그 비용산정 방법 및 할당 방법은?

### □쟁점검토

1. 법적 근거  
 가.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거래가격 방법이다(19 U.S.C. § 1401a).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적절하게 할당된 생산지원 비용을 포함한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가격을 말함(19 U.S.C. § 1401a(b)(1)(C)).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이미 검증된 가격에 근접한 하여야 함(19 U.S.C. § 1401a(b)(2)(B)).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는 반면, 당사자들은 그 거래가격을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나. 19 U.S.C 1401a(h)에 의하면 '생산지원'이란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며, 제품의 생산 또는 미국으로 수출판매를 위해,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제공한 다음의 것들을 말함.

- 1) 원재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입상품에 결합되는 것
- 2) 도구, 다이, 몰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입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
- 3) 수입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
- 4)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행해진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삽화, 디자인, 고안 및 스케치, 다만, 다음의 것은 생산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가) 해당 작업을 을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수행하는 경우

나) 해당 작업을 구매자의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개인이 행하는 경우

다) 해당 작업이 미국에서 행해지는 기타 기술, 개발, 삽화, 디자인 또는 고안 및 스케치 작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경우

2. 관련 판례 및 예규

가. HQ 547847

Technical Package 는 신발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생산지원에 해당 됨.

나. HQ 548368

특정 디자인 용역은 수입의류 생산에



필수적이며, 이는 생산지원에 해당 됨.

3. 쟁점검토

가. 쟁점 사안 1: (I)가 행한 특정 작업이 생산지원에 해당 되는가?

(I)에 따르면, 디자인 작업은 (S)가 행하고, (I)의 두 직원이 행하는 작업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개인들이 행하는 일이며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타 디자인 작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므로, 두 직원이 디자인 작업에 공헌하는 바는 생산지원이 아님.

나. 쟁점사안 2: (S)가 행한 특정 디자인 작업이 생산 지원에 해당 되는가?

1) (I)가 당 사안을 아시아 소재 제조자들에게 제공된 작업과 관련한 사안으로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당 사안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두 곳 모두에서 제조된 제품들과 관련된, (S)가 수행한 디자인 작업이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함.

2) (I)는 참조 패턴과 참조 샘플이 공장 참조용에 불과하며 제품생산에 불필요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의류생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함.

3) 제시된 디자인 정보가 단순한 Concept 이상의 것으로서, (S)가 수입제품에 행한 디자인 작업은 생산지원에 해당 됨.

다. 쟁점사안 3: 생산지원 비용의 평가 방법 및 비례배분 방법

1) 생산지원의 평가

가) (I)주장에 따르면, (I)가 (S)에게 디자인 작업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체 생산지원에 해당되며, 19 CFR 에 의거 자체 생산지원 금액은 생산지원을 발생시키는 그 비용에 생산지까지 이동하는 비용을 가산한 금액 임.

나) (I)에 따르면, (S)는 (I)가 수입한 의류의

특정 스타일마다 행해진 디자인 작업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나, 해당 작업에 관여했던 피고용인들에게 지불했던 임금 내역은 가지고 있으므로, 총 1년간의 봉급을 1역년 동안 생산된 모든 관련 제품에 할당함으로써, 생산지원 비용을 결정하기를 제안함.

다) 또한, 컴퓨터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기술 디자이너, 기술 디자인 보조자 등이 디자인 작업을 행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급된 봉급이 생산지원 금액의 일부를 구성 할 수 있다고 함. 도판 및 기술 명세서 세트를 아시아 제조자 들에게 운송할 때 발생한 특송 비용도 생산 지원에 추가 되어야 함.

라) 예를 들어, 디자인과 관련한 개인들에게 지급된 총 봉급에, 적용 가능한 운송 비용을 추가한 비용이 \$100,000 이고 대상 의류의 50% 가 미국으로 수입된다면, 생산지원 비용은 \$50,000 임.

마) 생산지원 평가 방법은 합리적이며,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부합한다면, 위 평가 방법은 용인 가능 함. 또한 두 번째 쟁점 사안에 대한 결정에 따라, 생산지원의 평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사용된 디자인 작업 과 관련한 것임을 밝힘.

2) 생산지원의 비례배분

생산지원 비용의 비례배분에 관하여, 19 CFR 에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가)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지원 비용의 비례 배분은 사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안과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행해짐. 실제로 세관이 수용하는 분배 방법은 수입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좌우함.

나) 생산지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예상 총

생산이 미국 수출을 위한 것이라면, (i) 그 총 금액은 첫 번째 선적 분에 비례배분 가능하며, 수입자가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하기를 원하는 경우 (ii) 첫 선적이 이루어 지는 시간까지 생산된 제품의 수에 비례배분 가능하고, (iii) 총 예상 생산량에 비례배분 할 수 있음.

다) 이 외에도 수입자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른 비례배분 방법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예상 생산량의 일부만 미국으로 수출되고, 생산지원이 여러 국가에서 이용된다면, 비례배분 방법은 수입자가 제시하는 문서들이 좌우함.

(I)는 총 예상 생산지원 비용을 각 1역년 동안 행해진, 첫 면세 수입 건에 비례배분하기를 제안함. TAA 에 따르면, 생산지원 비용을 첫 면세 신고 건에 비례배분 할 수 없음.

수입물품 금액은 다양한 관세율의 영향을 받으므로, (I)는 각 역년 동안의 총 생산지원 비용을 해당 역년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의 총 수입물품 금액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기를 제안함.

예를 들어, 1 년간의 생산지원 비용이 \$50,000 이고, 그 해의 총 수입물품 금액이 \$1,000,000(관세율 0% 수입물품 \$500,000; 관세율 5% 물품 \$300,000; 관세율 10% 물품 \$200,000)이라면, (I)는 면세 신고 건에 \$25,000; 5% 세율 물품에 \$15,000; 10% 세율 물품에 \$10,000 을 할당 할 수 있음.

제시된 정보에 의하면, 제안된 비례배분 방법은 19 CFR 과 일치함. 그러나, 실제 비례배분은 평가 부서에 제출된 문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에 주목 해야 함.

□결정

미국에서 (I)의 두 직원이 행한 디자인 작업은 생산지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S)가 행한 디자인 작업은 생산지원에 해당함. 두 번째 쟁점 사안과 관련한 생산지원은 위에서 기술했던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음. 생산지원 비용은 각 역년 동안의 첫 면세 신고 건에 비례배분 할 수 없음. 첫 면세 신고 건에 비례배분 하지 않는다면, 생산지원 비용은 위에서 기술한 방식으로 비례배분 가능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윤 순 형  
(shyoo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감사합니다~ 관세법인 최초 AEO 인증 획득!!



장승희 대표 관세사

저희 신한이 관세법인 최초로 관세청의 AEO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한이 나아가는 길에 더욱 굳건한 반석을 다졌다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비상을 꿈꾸어 왔습니다. 큰 도약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옛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하! 단단한 회사를 만들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찾아오는 회사가 되게 하자는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한관세법인의 AEO 인증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을 하여 노력을 하였고 특히 TF Team 에서는 오랜 기간을 주말을 반납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겠습니다.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관세청 차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를 이끄시는 박상태 사장님께서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의 이중적 외교' 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양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할 때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한미 FTA 의 비준을 위한 긍정적인 논의가 미국 국회 내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FTA 컨설팅에 많은 경험과 정보 및 지식을 보유한 신한에서 지속적으로 중요 사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 맑은 햇살이 반짝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모두 더욱 행복하시고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 AEO TF 팀장과의 -問-答(일문일답)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용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FTA News- 실무로 본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이 준 혁 관세사 (jh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장
- 기획재정부 FTA 동영상강의
- 최초민간 FTA 홈페이지 "FTAGATEWAY" 개설
- FTA Self Checking System 특허출원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의 양면성 실리를 중시하는 이중적 외교



박 상 태 사장 (stpark2009@hanmail.net)

PROFILE

- 現)한국전자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前)관세평가포럼 회장
- 前)한국신용평가정보(주) 대표이사 사장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덤핑방지과세 부과에 관한 규칙등



서 유 진 관세사 (yi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지사
- AEO T/F Team
- 2008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US Rulings 연재@ 생산지원 평가 및 비례 배분



윤 순 형 관세사 (shyoo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2 부
- 통관 2 부 팀장
- AEO T/F Team